

라. 곤충산업 육성 지원

1) 곤충산업 육성지원 사업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229-5892)입니다.

【사업개요】

□ 목 적

- 고부가가치 곤충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새로운 소득원 창출 및 농산업 경쟁력 제고
 - 곤충생산단지, 곤충 체험 및 학습시설 조성 등 곤충 산업기반 조성 지원

□ 근거법령

- 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4조

□ 성과목표 및 지표

- 곤충산업기반 조성을 통해 '15년까지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시설 60개소 조성

성과지표	2011 목표치	최근 3개년 실적			지표산출 시기	측정방식
		'08	'09	'10		
▪ 곤충생산단지조성개수	4	-	-	-	'11.12월.	사업대상자 선정결과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개수	8	-	-	-	'11.12월.	"

□ 연도별 재정투입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8년까지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이후
합 계	-	-	-	5,660	22,640
보 조	-	-	-	1,700	6,800
응 자	-	-	-	0	0
지방비	-	-	-	1,700	6,800
자부담	-	-	-	2,260	9,040

【2011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 사업대상자

- 곤충농가(곤충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농가)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자격 및 요건

- 곤충생산단지조성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또는 등록예정자), 생산자단체
 - 곤충농가 5호 이상이 참여하는 작목반
- 곤충 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또는 등록예정자), 곤충농가, 농업인, 생산자단체

□ 지원대상

- 곤충생산단지조성
 - 곤충생산 관련 사육실, 전시·체험·판매 등 복합시설의 건축비, 장비 구입비
 - * 토지매입 경비는 포함되지 않음
- 곤충 체험·학습시설 조성
 - 곤충사육 및 교육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비, 체험학습을 위한 교육장비 등

□ 지원자금의 사용용도

- 곤충생산단지조성 사업
 - 곤충사육실, 저장고, 곤충전시·체험학습시설 등 건축비(시설설계비 및 감리비 사용 가능)
 - 냉난방기, 향온기, 가습기, 사료분쇄기, 건조기, 세척기 등 장비구입비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사업
 - 곤충사육실, 체험·학습·전시 시설의 신규 설치 또는 개·보수비
 - 빔프로젝트 등 체험학습 교육장비 구입비

□ 지원형태

- 지원기준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곤충생산단지조성 : 단지당 총사업비 1,000백만원 한도 기준
 - 국고 지원한도액은 단지당 300백만원 이내
 - * 산출근거 : 1개소×1,000백만원×국고30%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 개소당 총사업비 200백만원 한도 기준
 - 국고 지원한도액은 개소당 60백만원 이내
 - * 산출근거 : 1개소×200백만원×국고30%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 사업신청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12월 하순)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당해 연도 사업희망자 수요조사를 위한 공문을 시·군·구에 시달(공문접수 후 즉시 이첩)
- 시장·군수·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한 사업 공고를 통해 사업수요조사를 실시(1월 : 사업공고기간 30일이상)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신청서(붙임 1)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사업성검토서(붙임 2)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도지사는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타당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자체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시·도별로 각 내역사업별 2개소 이내로 우선순위를 정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업성검토서(붙임 2)와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2월 상순)

사업신청자

- 사업희망자는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 제출(1월하순)
 - 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에 의한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준용한 붙임 양식 사용

□ 사업자 선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사업선정위원회(7인 이내)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사업대상자를 선정·통보(3월 상순)
 - 사업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 사업부지 확보*, 곤충사육경력·교육실적, 판매유통계획, 학습체험시설 사업운영계획 등을 평가
- * 사업부지 미확보, 인허가 해소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 당해 연도 사업추진이 불명확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 단계

사업대상자

- 사업자로 확정된 대상자는 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 사업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월별 공정계획 등을 포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
- 사업대상자는 승인을 받은 사업세부시행계획 중 아래 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 요청 후 승인을 받아 시행
 -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 : 시장·군수·구청장 승인(시·도지사에게 보고)
 -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 시·도지사 승인(농림수산식품부 보고)

시장·군수·구청장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의 사업세부시행계획서 승인 및 월별공정계획을 시·도지사에게 제출

- 시장·군수·구청장은 사업대상자로부터 대표자 변경,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한 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승인하고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보고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승인한 사업세부 시행계획 중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경우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세부 시행계획 및 월별공정계획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부터 지원금액 범위내의 계획변경 요청이 있을 경우 검토 승인하고 검토결과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시·도지사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을 포기한 경우는 사업포기서를 첨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
 - * 사업포기에 따른 사업대상자 추가선정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사업타당성 검토를 거쳐 실시할 수 있음

□ 자금배정단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로부터 보조금 교부 신청을 받아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 및 보조금 교부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는 사업대상자에 대하여 매 월별로 사업자금수요를 파악하고, 사업진척도에 따라 분기별 사업비를 농림수산식품부에 요청
 - 필요시 월별 사업비 요청이 가능하며,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사업자금집행규정에 따름
- 시·도지사는(시장·군수·구청장) 보조금을 집행할 때에는 공사실적에 따라 지원비율을 준수하여 집행

□ 이행점검단계

《사후관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지사

-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 및 자금집행상황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통해 사후관리 및 감독 철저
- 시·도지사는 회계연도 종료 또는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사업비를 검정 및 정산하여 농림수산식품부에 보고
-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재산명	사후관리기간		처분제한기준	비고
	부터	까지		
곤충생산단지 건물	시설완료 준공일	10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용도변경,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을 금지	-
장비	구입일	5년		

농림수산식품부

- 농림수산식품부는 시·도지사와 합동으로 반기별로 1회 이상 사업추진 및 자금집행 상황 현장점검 실시

《제재》

사업관리 및 자금관리주체 :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 사업실적 점검결과 사업추진이 부진하거나 부실집행, 무단용도 변경을 확인 시에는 자금회수 및 예산 지원 축소 등의 조치를 취함

□ 성과측정 단계

- 성과지표 달성여부는 사업선정 결과 및 최종사업완료여부로 측정
 -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제출된 사업추진상황점검결과 및 사업정산보고서를 확인

□ 사업평가 및 환류단계

- 곤충생산단지조성 및 곤충체험·학습시설 조성 사업에 대한 사업평가회 추진
 - 참석대상 : 농림수산물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
 - 평가결과에 따라 제도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은 사업시행지침에 반영 검토

【2012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 2012년도 사업수요조사 실시('11. 3월)
 - 수요조사 방법 : 시·도지사는 지역별 사업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제출

□ 2012년도 사업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안내

- 2011년도 사업시행지침 내용을 준용하여 신청
 - 사업공고 : 시·군·구 홈페이지 등 30일 이상 공고
 - 제출기간 : 2012. 1월말까지
 - 신청자격 : 2011년도 신청자격과 동일

<붙임 1>

곤충생산단지조성, 사업 신청서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

신청자	사업장 명칭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 번호	() -		
	주 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 (주요 곤충 용도 :)				
	생산자단체등의 형태	협동조합, 기타	법인, 작목반,	참여 농가수	호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 업 비 (천 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내용	- 곤충종류 : - 시설장비 :				
<p>농림수산사업실시규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판매실적 등)사본 1부(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곤충생산단지조성, 사업 계획서
□곤충체협학습시설조성

1. 신청자 현황

- 신청자 (법인명, 생산자단체명 등) : (대표 : 0000)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현 황

대표자			회원수		
설립일			담당자		
출자액			전담직원수		
연간매출액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사업					

- 참여 농가수

2. 사업장 건설계획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단가	완 료 예정일	'11년도 투자계획			
					합계	국고	지방비	자담
건설비	설계비							
	감리비							
	사육시설	m ²						
	저온저장실	m ²						
	창고	m ²						
	·							
	·							
·	소계							
장 비 구입비	냉난방기							
	항온기							
	프로젝트빔							
	체험장비							
	·							
	·	소계						
계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
 - 참여 곤충농가의 곤충사육에 관한 기술능력(사육경력, 사육기술, 특허보유, 교육실적 등)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현황
 - 참여 곤충농가의 자부담 확보계획

참여농가명	곤충사업실적			자부담 계획	서명	비고
	곤충사육경력	보유시설	'10년 매출액			
○ ○ ○ ○ ○ ○ 계	년 월 -		천원 -	천원		교육이수실적, 곤충관련활동실적 -

※ 대표자는 이력서 첨부(곤충관련 경력 기재), 참여농가의 자부담계획은 서명날인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위 치 :
 - 부지면적 :
 - 부지확보 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1/4분기	2/4	3/4	4/4
○ ○ ○ ○ ○ ○ ○ ○				

□ 생산·판매 실적 및 계획

<곤충생산단지조성사업>

- 최근 3년간 생산·판매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비고
생산품목				
생산량(마리)				
판매량(마리)				
매출액(천원)				
판매처				

○ 곤충생산계획

연도	2011계획	2012	2013	2014	2015
생산품목					
생산량(마리)					
매출액(천원)					
판매처					

○ 판매·유통 계획 및 운영수지계획 (구체적으로 작성)

-

<곤충체험·학습시설조성사업>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비고
관람객수				
매출액				
관람대상				

○ 운영계획

연도	2011계획	2012	2013	2014	2015
관람객수					
매출액					

○ 관람객 유치 및 운영수지 계획

-

<붙임 2>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생산자단체 등의 명칭		생산자단체 등의 형태		참여자수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화		
주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업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국고	지방비	자담
	사업예정지					

2. 사업검토

구분		평가			검토의견
		상	중	하	
사업능력	○대표자 사업능력 - 곤충사육장 운영 경력 - 체험·학습장 운영 경력 ○농가의 참여도 - 곤충사육경력자 수 - 자부담 정도 ○곤충사육기술 능력 보유				- - - - -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전망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 -
유통·판매 계획	○최근 3년간 운영실적 ○판매유통계획의 적정성				
기타	○사업부지확보 여부				

※ 평가를 판정한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반드시 작성

4. 종합의견

-
-

년 월 일
 ○ ○ ○ ○ 장 (인)

()분기 추진실적(완료) 보고

사업개요

- 사업자 성명(사업기관 명) :
- 주소 :

추진(완료)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사업자명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B/A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계(A)	보조	지방	자담	계(B)	보조	지방	자담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기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

2)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229-5892)입니다.

□ 추진근거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곤충산업 종사자 신고

- 신고처 : 시·군 곤충업무 담당 부서
- 신고대상 : 곤충 사육업·생산업·가공업·유통업
- 신고양식 : 붙임 제1호 서식 활용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에서 인정하는 곤충의 종류(법 제5조제1항관련)

구분	종류
천적곤충	긴털이리응애, 꼬마무당벌레, 사막이리응애, 진디혹파리, 무당벌레, 어비진디벌, 진디면충좀벌, 칠성풀잠자리붙이, 담배장님노린재, 으뜸애꽃노린재, 가는빨다리좀응애, 굴파리좀벌, 쌀좀알벌, 갈색반날개, 배노랑금좀벌, 칠레이리응애, 콜레마니진디벌, 온실가루이좀벌, 황온좀벌, 담배가루이좀벌, 지중해이리응애, 오이이리응애, 미끌애꽃노린재, 잎굴파리고치벌, 배추나비고치벌, 참딱부리노린재, 예쁜가는배고치벌, 오리꽃등애, 꼬마남생이무당벌레, 팔라시스이리응애, 응애잡이혹파리, 민개알반날개, 짜리진디벌, 어리줄풀잠자리, 나팔이리응애, 명충알벌, 프루텔고치벌, 알깡충좀벌, 검정알벌,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화분매개곤충	뒤영벌류, 꿀벌류, 빨가위벌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환경정화곤충	동애등애류, 소똥구리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식용·약용곤충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식용 또는 약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곤충
학습·애완곤충	노린재류, 풍뎅이류, 개미류, 여치류, 나비류, 반딧불이류, 사슴벌레류, 하늘소류, 수서곤충류, 귀뚜라미류, 꽃무지류, 메뚜기류, 물방개류, 매미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사료용 곤충	거저리류, 귀뚜라미류, 동애등애류, 파리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곤충
그 밖의 동물	거미류, 지네류,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척추동물

[제1호 서식]

곤충의 []사육업 []생산업 []가공업 []유통업 신고서

(앞 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열람일	처리기간	5일
------	-----	--------	------	----

신고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보통명	학 명	용 도	수 량
신고사항				

명세	
----	--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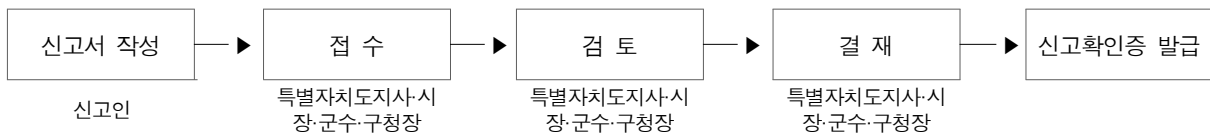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첨부서류	1. 취급하려는 곤충의 사진 1부 2. 사육시설 또는 관리시설의 도면이나 사진 1부	수수료 없음
------	---------------------------------------------------	-----------

작성요령

1. 주소란에는 개인인 경우는 거주지 주소를, 기관인 경우는 사업장 소재지를 적습니다.
2. 용도란에는 사육, 생산, 가공, 유통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수량란에는 마릿수, 상자 수 또는 무게 등의 단위로 적습니다.
4. 명세란에는 곤충의 종별로 발생태별 개체수 등을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처리절차



2) 곤충농가 시설개선 시범

* 이 사업의 해석기관은 기술보급부 생활경영과(지방농촌지도사 조정주, 031-229-5892)입니다.

□ 목 적

- 곤충자원 개발을 통한 새로운 소득원 창출로 농가 소득 향상
-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맞춘 새로운 농업의 신 성장동력으로 육성

□ 추진방향

- 곤충의 다양성을 활용한 농가 소득사업으로 연계 추진
- 곤충산업 농가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향상
- 수도권을 중심에 둔 우리도의 특성에 맞는 체험·교육 농장형 곤충 산업 육성

□ 추진근거

-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3조, 제14조

□ 추진계획

- 사업량 : 4개소(남양주, 김포, 파주, 안성)
 - 사업비 : 200,000천원(개소당 50,000천원, 도비 30%, 시군비 50, 자부담 20)
 - 사업대상 : 곤충사육 및 체험·교육농장 운영 농업인
(단, 사업대상자는 곤충 종사자 신고 농업인중에서 선발)
 - 시범요인
 - 열악한 곤충 사육 시설 현대화 추진 : 저온저장고, 사육장, 사육기자재 등
 - 체험·교육 농장 운영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추진
 - 지원내역
 - 곤충 사육 시설 및 체험·교육 시설 신축 또는 리모델링 등
 - 사육 기자재 지원 : 소형 저온저장고, 사육 박스 등 기자재
 - 체험·교육농장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컨설팅 등
- ※ 프로그램 개발비 또는 컨설팅 비용은 전체 사업비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성**

□ 기대효과

- 곤충 자원을 활용한 체험·교육 농장 운영으로 소득 향상
- 곤충사육 농가 육성 및 기술 지원으로 농가 신 소득원 개발

□ 행정사항

- 사업 신청서 및 타당성 검토 : 시군 자체 실시 (제1, 2호 서식 활용)
 - 사업신청 공고
 - 시·군 시범사업 신청 공고시 붙임 제1호,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
 - 사업신청자에 대한 사업 검토서 작성 : 제2호 서식
 - 사업대상자 선정 : 시·군 자체 심의회에서 확정
- 보조사업자 대상 변경 : 사업대상 농업인이 사업을 포기하거나 시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지역여건에 맞게 차순위자를 결정하거나 새로운 대상 선정 등을 의결하고 변경확정 후 도 농업기술원장의 승인 요청
 - ※ 기타 사항은 『경기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참조
- 사업 추진 계획 보고 : 3. 30 (제3호 서식)
- 사업 추진 실적 보고 : 12. 5 (제4호 서식)

[제1호 서식]

사업 신청서

신청자	사업장 명칭				
	성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	-
	주소				
	곤충산업 종사경력	년 (주요 곤충 용도 :)			
신청내용	사업예정지 (동리 번지까지 기재)				
	사업비 (천 원)	합계	국고	지방비	자부담
	사업내용	- 곤충종류 : - 시설장비 :			
<p>2011년도 농촌지도사업 기본지침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right;">신청자 (서명 또는 인)</p> <p>○ ○ (시장·군수·자치구청장) 귀하</p> <p>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 1부. 2. 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판매실적 등)사본 1부(기록 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p>					

[제2호 서식]

사 업 성 검 토 서

1. 신청자

성 명 (대표자명)		생년월일 (남/여)		전 화		
주 소						
신청내용	사업명		사 업 비 (천원)			
	사업규모		합계	도 비	시군비	자부담
	사 업 예정지					

2. 사업검토

구 분		평가			검 토 의 건
		상	중	하	
사업능력	○대표자 사업능력 - 곤충사육장 운영 경력 - 체험·학습장 운영 경력 ○농가의 참여도 - 자부담 정도 ○곤충사육기술 능력 보유				- - - - -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전망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 -
유통·판매 계획	○최근 3년간 운영실적 ○판매유통계획의 적정성				
기타	○사업부지확보 여부				

※ 평가를 판정한 근거를 확인 할 수 있는 검토의견을 반드시 작성

4. 종합의견

-
-

년 월 일
 ○ ○ ○ ○ 장 (인)

[제3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3. 30)

1. 신청자 현황

- 신청자 : (농장명 : 0000)
- 주소 :
- 연락처 : (휴대전화)
- 현황

대표자			설립일			
	연간매출액	2008년	2009년	2010년		
주요사업	○					
	○					

2. 사업 계획

- 세부사업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내용	사업규모	단가	완료 예정일	'11년도 투자계획			
					합계	도비	시군비	자부담
시설비비	설계비							
	사육시설	m ²						
	저온저장실	m ²						
	창고	m ²						
	.							
	소계							
장비 구입비	냉난방기							
	항온기							
	프로젝트빔							
	체험장비							
	.							
	소계							
프로그램 개발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컨설팅비							
	.							
	소계							
계								

- 보조사업자의 사업추진 능력
 - 참여 곤충농가의 곤충사육에 관한 기술능력(사육경력, 사육기술, 특허보유, 교육실적 등)
 - 현재 보조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현황
 - 참여 곤충농가의 자부담 확보계획

참여농가명	곤충사업실적			자부담 계획	서명	비고
	곤충사육경력	보유시설	'10년 매출액			
○ ○ ○	년 월		천원	천원		교육이수실적, 곤충관련활동실적

※ 대표자는 이력서 첨부(곤충관련 경력 기재), 참여농가의 자부담계획은 서명날인

- 부지확보 계획(건축공사가 있는 경우)

- 위 치 :
- 부지면적 :
- 부지확보 여부 : 기확보, 미확보

* 부지 미확보시에는 사업시행시점까지 확보계획(추진일정) 작성

- 세부사업별 추진일정

세부사업내용	1/4분기	2/4	3/4	4/4
○ ○ ○ ○				
○ ○ ○ ○				

□ 생산·판매 실적 및 계획

<곤충생산사업>

- 최근 3년간 생산·판매 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비고
생산품목				
생산량(마리)				
판매량(마리)				
매출액(천원)				
판매처				

<곤충체험 · 교육 농장 운영>

- 최근 3년간 운영실적

구 분	2008	2009	2010	비고
관람객수				
매출액				
관람대상				

- 운영계획

연도	2011계획	2012	2013	2014	2015
관람객수					
매출액					

- 관람객 유치 및 운영수지 계획

-

[제4호 서식]

추진결과 보고 (12. 5)

사업개요

○ 사업자 :

○ 주소 : (연락처 :)

추진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자명	사업계획	사업량			사업비								B/ A		
			계획	실적	%	계획				실적						
						계 (A)	도비	신규비	자담비	계 (B)	도비	신규비	자담비			
		소 계														

※ 사업자의 실제 집행액(대출액) 기준으로 작성

경영성과 분석

시군	조수입			경영비			소득			비고
	'11	'10	증감(%)	'11	'10	증감(%)	'11	'10	증감(%)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항 목	문 제 점	개 선 방 안

○ 건의사항

-

우수사례

○

기 타

○ 사업완료시 건축물·시설 사진, 건축물 사용승인(준공허가)서류, 등기서류, 준공된 사업장 평면도 등 첨부